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안전의 날 지정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40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20884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항공안전의 날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2
가. 검토의견	2
나. 국토교통부 의견	5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20884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2.
3.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항공안전의 날 지정(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어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¹⁾)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음.

1)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이에 개정안은 12·29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항공안전의 날에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항공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바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유사입법례 】

「도서관법」

-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섬 발전 촉진법」

-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항공안전의 날 지정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